

2018년 중구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문

■ 급식지원 신청방법

2018년 겨울방학 중 결식이 우려되어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2018년12월3일(월)까지**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2018년 여름방학 급식지원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 급식지원 방법

○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에 희망하는 급식 지원방법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급식지원방법

급식지원방법	[] 일반음식점(급식카드)	[] 도시락
	[] 지역아동센터	[] 학교급식소

※ 시 아동청소년과-8077(2016.06.13.)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개선계획」에 따라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1~6학년)**은 급식지원 시 **도시락 배달**로 지원 권고

■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아동의 결식우려 및 소득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의사진단서, 보호자의 재직증명서 등)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동명	담당자	전화번호	동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포동	정다미	032-760-6108	북성동	조수민	032-760-6232
연안동	강준구	032-760-6126	송월동	정성진	032-760-6249
신흥동	은선희	032-760-6153	영종동	김가은	032-760-8885
도원동	박종혁	032-760-6172	영종1동	윤상미	032-760-8997
율목동	정희정	032-760-6195	운서동	채미영	032-760-6267
동인천동	윤정혜	032-760-6207	용유동	민인경	032-760-6293

※ 중구청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팀 결식아동급식담당자 ☎ 032-760-7142

■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의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동반장, 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신청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별 제출 증빙서류】

지원대상	증빙자료	공통사항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구의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③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지자체 확인 (지자체 지원 가구만 해당)	- 결식우려 사유 증빙서류 제출 (맞벌이, 보호자 질병·부재 등)
④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확인서 등 -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2개월분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 담임교사 등 추천서	

- 2018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 -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869천원	27,572	4,704	28,479
		(29,607)	(5,051)	(30,600)
2인	1,480천원	46,438	18,867	46,800
		(49,865)	(20,259)	(50,254)
3인	1,915천원	59,850	38,276	60,596
		(64,267)	(41,101)	(65,068)
4인	2,350천원	74,142	65,213	74,856
		(79,614)	(70,026)	(80,380)
5인	2,785천원	86,958	88,155	87,580
		(93,376)	(94,661)	(94,043)
6인	3,219천원	100,955	108,657	102,190
		(108,405)	(116,676)	(109,732)
7인	3,654천원	114,241	128,071	115,568
		(122,672)	(137,523)	(124,097)
8인	4,089천원	128,669	147,070	130,370
		(138,165)	(157,924)	(139,991)
9인	4,524천원	141,300	161,163	143,379
		(151,728)	(173,057)	(153,960)
10인	4,958천원	156,121	176,921	158,193
		(167,643)	(189,978)	(169,868)

* 괄호 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준액수임